

「子ども手当」の申請について
(2011年10月1日~2012年3月31日分)

[어린이 수당] 신청에 관해서
(2011년 10월 1일~2012년 3월 31일분)

※2011年10月1日から支給要件、支給額等が変わりました。

※2012年4月以降は新しい支給制度になる予定です。

※2011년 10월 1일부터 지급요건, 지급금액이 바뀐습니다.

※2012년 4월 이후에는 새로운 지급제도로 바뀔 예정입니다.

1 子ども手当は次のような場合に支給されます

1 어린이 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子ども手当制度とは？

2010年4月から、日本国内に住民登録をしている方、又は外国人登録をしている方で、支給対象となる子どもを養育している方に手当が支給されます。(ただし、在留資格が「短期滞在」「興行」の場合、又は在留資格の無い場合は支給対象外です。)

(1) 어린이 수당 제도란?

일본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을 필 한 사람으로서, 어린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2010년 4월부터 어린이 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재류자격이 없거나 [단기체재][홍행]일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支給対象となる子ども

0歳から中学校修了までに相当する年齢の子ども(15歳になった最初の3月31日まで)が対象になります。

なお、海外に住んでいる子ども(留学の場合を除く※)は原則支給対象にはなりませんので、ご注意ください。

※ 留学を理由に海外に住んでいる場合は、以下の要件を全て満たせば支給対象となります。

- ・日本国内に住所を有しなくなった前日までに日本国内に継続して3年を超えて住所を有していたこと
- ・教育を受けることを目的として海外に居住しており、父母(未成年後見人がいる場合はその未成年後見人)と同居していないこと
- ・日本国内に住所を有しなくなった日から3年以内であること

(2) 지급대상이 되는 어린이

0세부터 일본의 중학교 수료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어린이(15세가 된 후 처음 맞는 3월 31일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해외에 살고 있는 어린이(유학의 경우를 제외 *)는 원칙적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학을 이유로 해외에 살고있는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일본 국내의 주소가 없어지는 전날까지 일본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미성년자 후견인이 있는 경우는

그 미성년 후견인)와 동거하고 있지 않다.

일본 국내의 주소가 없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일 것.

(3) 支給金額

子ども1人につき、以下のとおり支給されます。

(支給対象年齢)	(支給月額)
0歳～3歳未満	15,000円(一律)
3歳～小学校修了前	10,000円(第1子・第2子) 15,000円(第3子以降)
中学生	10,000円(一律)

(3) 지급 금액

어린이 한 명당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연령)	(지급월액)
0세~3세미만	15,000(일률)
3세~초등학교 졸업전	10,000(첫째아이, 둘째 아이) 15,000(셋째 아이 부터)
중학생	10,000(일률)

(4) 支給時期及び方法

支給時期については、2011年10月～2012年1月分(4か月分)の手当は2012年2月に、2012年2月、3月分(2ヶ月分)は2012年6月に、それぞれ子どもを養育している方名義の口座に振り込まれます。

(4) 지급시기 및 방법

지급시기는 2011년 10월~2012년 1월분(4개월분)의 수당은 2012년 2월에, 2012년 2월 3월분(2개월분)은 2012년 6월에 각각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2 子ども手当を受け取るためには、申請が必要です

2 어린이 수당을 지급받으실 분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1) 子ども手当の支給を受けるためには、申請が必要です。手当を受けたい方は「子ども手当認定請求書」に必要なことを記入し、(2)の書類と一緒に、4の申請窓口申請してください。市区町村が申請内容を確認し、認定した場合に手当が支給されます。

なお、2011年9月以前の子ども手当を受け取っていた方も2011年10月以降の子ども手当を受け取るためには、改めて申請が必要にな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

※「子ども手当認定請求書」は、4の申請窓口で入手できます。また、ご希望に応じて郵送しますので、4のお問い合わせ先までご連絡ください。

(1) 어린이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수당을 받으실분은 [어린이수당 인정청구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신후 (2) 서류와 함께 4. 의 신청 창구에 신청하십시오. 시구읍면이 신청내용을 확인, 인정한 경우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2011년 9월 이전 어린이 수당을 받으셨던 분도 2011년 10월 이후의 어린이 수당을 받기 위하여는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 수당 인정 청구서]는 4. 의 신청 창구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에 따라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도 하니, 4. 의 문의처로 연락하십시오.

- (2) 申請する時に「子ども手当認定請求書」と一緒に提出するもの
- ・申請する人の外国人登録証の写し
 - ・申請する人の健康保険証（健康保険に入っている場合）の写し
 - ・振り込み先の預金通帳の写し（申請者本人の口座に限ります）
- ※その他、必要に応じて書類の提出を求められることがあります。
- (2) 신청 시 [어린이 수당 인정청구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것
- ・신청자본인의 외국인 등록증의 복사
 - ・신청자본인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 복사
 - ・입금구좌용 통장의 복사 (신청자 본인의 구좌에 한함)
- ※그 외, 다른 서류의 제출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3) 2011年10月1日の時点で受給資格のある方は、2012年3月末までに申請をすれば、10月分から手当を受け取ることができます。
- (3) 2011년 10월 1일의 시점에서 수급 자격이 있는 분은, 2012년 3월말까지 신청을 하면, 10월분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2011年10月以降に他の市区町村へ転居される方は、転出した日（転出予定日）の翌日から15日以内に、転入先の市区町村へ必ず申請してください。
- 転出した日の翌日から15日を過ぎて申請された場合、転入後の期間についての手当は申請のあった月の翌月分から支給となりますので、満額の手当を受け取れないことがあります。
- (4) 2011년 10월 이후에 다른 시구읍면에 이사하는 분은, 전출한 날(전출 예정일)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처의 시구읍면에 반드시 신청해 주세요.
- 전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15일을 지난후에 신청하실 경우, 전입 후의 기간에 대한 수당은 신청이 있던 달의 다음달분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액의 수당을 받을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 (5) 2011年10月以降に子どもが生まれた方についても、手当を遡って受け取ることはできませんので、生まれた日の翌日から15日以内に、必ず申請してください。
- (5) 2011년 10월 이후에 아이가 태어난 분의 경우에도 수당을 거슬러 올라가 받을 수 없기때문에, 태어난 날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 (6) 2011年10月以降に来日された方は、申請月の翌月分から支給されますので、来日後速やかに申請してください。
- (6) 2011년 10월 이후 일본에 오신 분은 신청달의 다음달 분부터 지급되므로, 일본에 오신 후 신속하게 신청하십시오.
- (7) 2012年2月に10月～1月の4か月分の支給を受けたい方は、○月△日までに申請してください。
- (7) 2012년 2월에 10월~1월 4개월분을 지급 받고 싶은 분은, ○월△일까지 신청하십시오.

3 お願い

3 당부

次のような場合には手続きが必要です

- ・住所が変わったとき（他の市区町村に転居した場合、新しい住所の市区町村で、改めて子ども手当の申請が必要です。）
- ・本人又は、対象の子どもが出国するとき
- ・子どもを養育しなくなったとき
- ・子どもと別居するとき
- ・出生や死亡などで、子ども手当支給の対象となる子どもの数が変わったとき
- ・振込先の口座を変更するとき（新しい振込先は、申請者本人の口座に限ります。）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속이 필요합니다.

- ・ 주소가 변경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경우, 새로운 주소의 관할행정기관에 어린이 수당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 신청자 본인 또는 대상의 어린이가 출국 하는 경우
- ・ 어린이의 양육을 하지 않게 된 경우
- ・ 어린이와 별거하게 된 경우
- ・ 출생 및 사망 등으로, 어린이 수당의 지급의 대상이 되는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
- ・ 입금구좌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입금구좌는 신청자 본인의 구좌에 한합니다.)

4 お問い合わせ先（申請窓口）

4 문의처 (신청창구)